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2010년 12월 20일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 희 영

나.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52%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시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제고
-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시정 및 보완을 통한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여,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권 보장에 그 목적이 있음

다. 주요내용

- 편의시설이 완공되기 전 사전검사 실시로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목적 규정(안 제1조)
- 편의시설 설치와 연구·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 근거마련(안 제4조)
- 사전검사 대상을 건축허가 이전의 설계도면과 사용 승인 전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로 하여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안 제5조)
-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편의시설 완화 등 관련사항 심의 근거 마련(안 제7조~ 8조)
- 사전검사요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전검사반은 담당공무원 포함 3명 이내로 편성·운영(안 제10~11조)
- 시설주의 사전검사 결과 적극 반영 책무 규정(제14조)

라. 참고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축법」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배 정 미

○ 본 조례안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내용은

- 편의시설이 완공되기 전 사전검사 실시로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편의시설 설치와 연구·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검사 대상을 건축허가 이전의 설계도면과 사용승인 전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로 하여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되도록 하였으며
-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편의시설 완화 등 관련사항을 심의하고
- 사전검사요원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며 점검반 편성은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3명 이내로 편성·운영하며 시설주의 점검시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점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구미시 1,400여명의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경상북도 시·군 표준조례 제정(안)에 없는 제7조 편의시설 심의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